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11. 27.

행정재경위원회

의안 번호	300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3. 강남구청장(민원여권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11. 27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국장 : 이호현)

가. 제안이유

- 조례에서 인용 중인 상위법령 명칭 개정사항 반영과 공인의 비치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재정비함으로써 강남구 공인을 효율적,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명칭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보완 정비(안 제3조)
-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조항을 따로 신설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체계적으로 관리(안 제8조의2)
- 그 밖에 효율적·체계적 관리를 위한 용어 및 문장 정비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40조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기 타
 -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- 입법예고 (2023. 10. 6. ~ 2023. 10. 2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- 본 일부개정 대상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」는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은 대통령령인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40조가 되겠음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18개 조문 중 제1조, 제2조, 제2조의2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, 제8조의2(신설), 제9조, 제17조와 관련된 것으로 상위법령 명칭 개정사항, 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보완 정비, 특히 일반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규정을 분리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임.
- 공인(公印)이라고 함은 사전적 의미로 “공공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공적인 일에 사용하는 도장”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공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됨.
 - 주요 정비사항을 검토해 보면, 먼저, 현행 제1조(목적)과 제17조(준용규정) 내의 상위법령명을 기존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서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 자구정비 및 일반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분리하여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

큰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, 공인 제작 및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